

제안이유

93. 2. 1일자로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구 명칭을 변경코자 함.

 주요골자

“중구 심곡2동”을 “원미구 심곡동”으로 개정(안 제2조)

### 부천시홍보전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홍보전시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중구 심곡2동”을 “원미구 심곡동”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치) 전시관은 부천시 <u>중구 심곡2동</u> 498번지(복부역광장지하)에 둔다.	제2조(위치) ..... <u>원미구 심곡동</u> .....

###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1. 심사결과

가. 제안일자 : 1995. 3. 17

나. 제 안 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5. 3. 17

라. 상정일자 : 1995. 3. 24

## 2. 제안설명요지

### 가. 제안이유

- 부천시립청소년관현악단, 합창단 창단을 통한 꿈나무 육성
- 시립예술단 간부단원 및 사무단원의 특별채용 시 대상자 추천권자를 예술단 단장이 2인 이상 복수 추천하던 것을 예술분야 전문가인 예술단 지휘자가 당해 분야에서 실력 및 인 품이 탁월한 자를 추천토록 하여 대상자 추천의 내실화를 기함
- 시립예술단이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연하는 외부출연 시 지급받는 협연수입금 조치 에 관한 적용규정이 없어 명문규정 삽입
- 교향악단의 수석단원 및 부수석단원 명칭을 타시·도의 예와 같이 제1수석, 제2수석으로 명칭변경

### 나. 주요골자

- 예술단체의 종류 중 청소년관현악단과 청소년합창단을 추가하고 이에 따른 단장 등의 직 무, 단원의 자격과 위촉, 위촉기간, 위촉명령의 제한, 운영위원회의 내용 개정
- 시립예술단체 간부단원 및 사무단원의 특별채용 시 대상자 추천권자를 단장에서 예술단 지휘자로 개정
-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시립예술단의 외부출연 협연수입금을 시세임으로 하고 세입된 금 액 중 90% 범위 내에서 실비 보상하는 규정 신설
- 교향악단 수석단원 및 부수석단원을 제1수석, 제2수석으로 명칭변경

##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청소년관현악단 및 합창단이 창단된 시기 있습니다?	○ 수원, 목포 등입니다.
○ 수원시는 몇 명입니까?	○ 80명입니다.
○ 우리시 1년 소요예산액은?	○ 약 3~4억원입니다.

##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없음

나. 반대토론

 없음

## 5. 심사결과

 수정의결(수정안 별지참조)

## 6. 소수의견요지

 없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8. 체계적 심사내용

 없음

##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 안	관련
번 호	355

제출년월일 : 95. 3. 24

제 출 자 : 총무위원회

## 1. 수정이유

시립예술단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하는 직책으로서 단원위촉을 지휘자에게 위임토록 개정하기 보다는 현행대로 단장의 추천에 의거 시장이 위촉함이 타당함

## 2. 주요골자

- 개정조례안인 제6조 제1항 제1호중 “예술단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단장의 재청으로 시장이 위촉한다”를 현행조례안인 “단장의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그 중 1인을 시장이 특별전형으로 위촉한다”로 하고 동항 제3호 단서 중 “예술단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단장의 재청으로 시장이 위촉한다”를 현행조례안인 “단장의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그 중 1인을 시장이 위촉한다”로 존치시킴

###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 제1항 제1호중 “예술단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단장의 재청으로 시장이 위촉한다”를 “단장의 2인 이상의 복수추천에 의거 그 중 1인을 시장이 특별전형으로 위촉한다”로 하고 동항 제3호 단서 중 “예술단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단장의 재청으로 시장이 위촉한다”를 “단장의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그 중 1인을 시장이 위촉한다”로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단원의 자격과 위촉) ① (생 략) 1. 간부단원은 국내외에서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u>단장의 2인 이상의 복수추천에 의거 그 중 1인을 시장이 특별전형으로 위촉한다.</u>	제6조(단원의 자격과 위촉) ① (현행과 같음) 1. .... ..... ..... 예술단 지휘자 의 추천을 받아 단장의 재청으로 시장이 위촉한 다. 2. (현행과 같음)	제6조(단원의 자격과 위촉) ① (현행과 같음) 1. .... ..... ..... 단장의 2인 이상 의 복수추천에 의거 그 중 1인을 시장이 특별전형으 로 위촉한다. 2. (개정안과 같음)
2. (생 략)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3. 사무단원의 선발은 공개경 쟁시험에 의한다. 다만, 공 개경쟁시험으로 선발이 어 려울 경우 특별채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u>단장의 2인</u> <u>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그</u> <u>중 1인을 시장이 위촉한</u> 다.	3. ..... ..... ..... ..... ..... 예술단 지휘자 의 추천을 받아 단장의 제 청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3. ..... ..... ..... ..... ..... 단장의 2인 이 상의 추천에 의하여 그 중 1인을 시장이 위촉한다.

###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55
의 결 년 월 일	95. 3. 28 (제36회)

제출년월일 : 95. 3. 17

제출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 부천시립청소년관현악단, 합창단 창단
- 시립예술단 간부단원 및 사무단원의 특별채용 시 대상자 추천권자를 예술단 단장이 2인 이상 복수 추천하던 것을 예술분야 전문가인 예술단 지휘자가 당해 분야에서 실력 및 인품이 타원한 자를 추천토록 하여 대상자 추천의 내실화를 기함.
- 시립예술단이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연하는 외부출연 시 지급받는 협연료수입금 조치에 관한 적용규정이 없어 명문규정 삽입
- 교향악단의 수석단원 및 부수석단원 명칭을 타시·도의 예와 같이 제1수석, 제2수석 명칭 변경

#### 주요골자

- 예술단체의 종류 중 청소년관현악단과 청소년합창단을 추가하고 이에 따른 단장 등의 직무,

단원의 자격과 위촉, 위촉기간, 위촉명령의 제한, 운영위원회의 내용 개정

- 시립예술단체 간부단원 및 사무단원의 특별채용 시 대상자 추천권자를 단장에서 예술단 지휘자로 개정
-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시립예술단의 외부출연 협연수입금을 시세입으로 하고 세입된 금액 중 90% 범위 내에서 실비 보상하는 규정 신설
- 교향악단 수석단원 및 부수석단원을 제1수석, 제2수석으로 명칭변경

개정조례(안) : 복임

신·구조문 대비표 : 복임

관계조례 : 해당없음

예산사항 : 4억

입법예고 : 해당없음

[수정안 포함]

###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무용단” 다음에 “청소년관현악단, 청소년합창단(이하 “청소년관현악단 및 합창단”이라 한다)”을 삽입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중 “수석”을 “제1수석”으로 하고 “부수석”을 “제2수석”으로 하며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청소년관현악단은 지휘자, 기획담당, 연습안무자 각 1명의 간부단원과 사무단원 1명, 비상임 단원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5. 청소년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기획담당, 성악지도, 안무지도 각 1명의 간부단원과 사무단원 1명, 비상임단원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동조 제3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향악단, 합창단지휘자, 무용단의 안무자, 청소년관현악단 및 합창단의 지휘자 중 지도력이 탁월하고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제4조 제2항 중 “및”을 삭제하고 안무자 다음에 “청소년관현악단 및 합창단의 지휘자”를 삽입한다.

제6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단, 청소년관현악단 및 합창단의 비상임단원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학교 재학 이상의 청소년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공개전형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7조 제1항중 “과”를 삭제하고 “안무자” 다음에 “청소년관현악단 및 합창단의 지휘자”를 삽입한다.

제8조 단서 중 “단” 다음에 “청소년관현악단 및 합창단의 비상임단원의 위촉연령은 만 20세 미만으로 하며”를 삽입한다.

제9조 제3항중 “및”을 삭제하고 “안무자” 다음에 “청소년관현악단 및 합창단의 지휘자”를 삽입하며 제6항중 “이상”을 삭제한다.

제11조 제1항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16조 중 “(입장료의 징수)”를 “(입장료의 징수 및 협연료의 수입)”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타기관, 단체와의 협연인 경우 협연료 수입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당해공연에 출연한 예술단체에는 협연료의 90퍼센트 범위 안에서 실비보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예술단체의 종류) 예술단체의 종류는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으로 한다.	제2조(예술단체의 종류) 예술단체의 종류는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u>청소년관현악단</u> , <u>청소년합창단</u> (이하 “청소년 관현악단 및 합창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생 략)	제3조(구성) ①(현행과 같음)
1. 교향악단은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부악장 및 기획담당 각1명의 간부단원과 수석단원 14명, 부수석단원 14명, 일반단원 57명 이내로 구성한다. 단 수석단원의 결원이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량이 우수한 단원중에서 수석대행자를 둘 수 있다.	1. .... ..... 제1수석 ..... 제2수석 ..... ..... 제1수석 ..... ..... 제1수석 .....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신 설)	4. 청소년관현악단은 지휘자, 기획담당, 연습안무자 각1명의 간부단원과 사무단원 1명, 비상임단원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5. (신 설)	5. 청소년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기획담당, 성악지도, 안무지도 각1명의 간부단원과 사무단원 1명, 비상임단원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교향악단, 합창단 지휘자 및 무용단의 안무자 중 지도력이 탁월하고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1. 교향악단, 합창단 지휘자, 무용단의 안무자, 청소년관현악단 및 합창단의 지휘자 중 지도력이 탁월하고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현 행	개 정 안
<p>②~③ (생 략)</p> <p>제8조(위촉연령의 제한) 단원의 위촉연령은 만55세 이하로 한다. 단, 예술단체의 지휘자 및 무용단의 안무자를 위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위촉연령의 제한) 단원의 위촉연령은 만55세 이하로 한다. 단, <u>청소년관현악단 및 합창단의 비상임단원의 위촉연령은 만 20세 미만으로 하며, 예술단체의 지휘자, 및 무용단의 안무자를 위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u></p>
<p>제9조(운영위원회) ① (생 략)</p> <p>② (생 략)</p> <p>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 실장이 되며 위원은 문화공보담당관, 시민 회관장, 교향악단 및 합창단의 지휘자, 무용 단의 안무자, 예총지부장, 음협지부장 등 당 연직과 기타 시장이 위촉하는 해당분야 전 공 교수로 한다.</p>	<p>제9조(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 실장이 되며 위원은 문화공보담당관, 시민 회관장, 교향악단, 합창단의 지휘자, 무용단의 안무자, <u>청소년관현악단 및 합창단의 지휘자, 예총지부장, 음협지부장 등 당연직과 기타 시장이 위촉하는 해당분야 전공 교수로 한다.</u></p>
<p>④~⑤ (생 략)</p> <p>⑥운영위원회의 정족수는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 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 이 결정한다.</p>	<p>④~⑤ (현행과 같음)</p> <p>⑥운영위원회의 정족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p>
<p>⑦ (생 략)</p> <p>제11조(전형방법) ①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 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 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6조 제4항의 특별전 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실시한다.</p>	<p>⑦ (현행과 같음)</p> <p>제11조(전형방법) ①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 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 하여 실시한다.</p>
<p>②~③ (생 략)</p>	<p>②~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 (임장료의 징수)</p> <p>①~③ (생 략)</p> <p>④ (신 설)</p>	<p>제16조(임장료의 징수 및 협연료 수입)</p> <p>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u>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타 기관, 단체와</u>  <u>의 협연인 경우 협연료 수입은 시의 세입으</u>  <u>로 한다. 다만, 당해 공연에 출연한 예술단</u>  <u>체에는 협연료의 90퍼센트 범위안에서 실</u>  <u>비보상할 수 있다.</u></p>

## 부천시공인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5. 3. 17

나. 제 안 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5. 3. 17

라. 상정일자 : 1995. 3. 24

### 2. 제안설명요지

#### 가. 제안이유

- 민원서류 발급 시 신속·정확한 대국민 편의도모와 행정사무자동화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관인부착인증기를 사용하고
- 현재 시에서 총괄하고 있는 공인관리 업무 중 동사무소 및 구청 회계관계 공인관리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여 효율적인 공인관리를 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다단계 처리절차를 필요로 하는 민원증명발급용 복합인증기 사용조항 신설 — (제3조의 3)
- 동사무소 및 구청 회계관계 공인관리를 시에서 구청으로 이관 — (제6조 ①항 및 ②항)